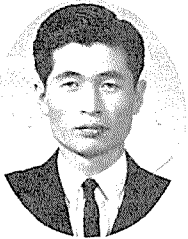


石油協會 發起에서 創立까지 그 設立過程을 돌이켜 본다.



韓 興 愚

(油公 法制部長 · 油協 設立 委員 會 幹事)

協會開所 1 周年에 즈음하여 감회가 적지 아니하다. 設立準備過程을 정리할 適當한 參考資料가 充分치 아니하여 여기에서는 80년 7월 9일 發起創立總會의 議事錄을 토대로 設立經緯의 大綱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차 實務會議는 油開公에서

80년 6월 17일 油開公에서 崔錫煥 理事 主宰로 5 個 精油会社 法制部署長 참석하에 1次 實務會議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協會의 명칭 · 事業目的 · 회원자격 · 任員의 定數等에 關係된 定款條項이었으며 그후 두차례의 會合을 거쳐 關係 法令을 검토하고 國內類似團體와 日本石油聯盟의 규약等 制限資料를 參考하여 定款案을 完善하기에 이르렀다. 실무회의의 討議過程에서 강조된 點은 社 團性 · 非營利性 · 法人性이었다.

社團性=國內精油5社를 주된 構成員으로 하는 社 團이어야 한다. 協會의 명칭은 精油協會대신 大韓 石油協會로 하면서 會員자격은 總會가 定하는 규모 이상의 石油精製시설을 갖춘 國內精油会社와 韓國 石油開發公社로 限定하였다. 그 결과 당초의 政府 試案과는 달리 石油輸入業者와 小규모 石油精製業者가 協會가입대상에서 除外되었다.

非營利性=協會의 設立목적이 收益事業을 營爲하

여 이윤을 추구함에 있지 아니한 點에서 非營利法人에 속함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오로지 公益만을 목표로 하는 公益法人과는 區別된다. 協會는 자체는 非營利法人이지만 營利法人을 構 成원으로 하면서 會員 상호간의 理解내지 우호증진 을 통하여 石油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기여함을 目 적으로하는 非營利 · 非公益 中間法人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協會의 本質에 입각하여 定款記載 事業 目的에서 「政府措置事項에 대한 協調」를 삭제 하였다.

法人性=協會는 總會의 결의를 중심으로 代表機 關의 行위에 의하여 自律的 · 獨自的으로 活動하는 權利 · 義務의 主体이다. 協會의 自律性 · 獨自性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理事의 定數를 각 會員사가 지명하는 6名으로 제한하고 따라서 常勤理事의 主 務部長官 就任承認條項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點에 關하여는 후일 創立總會에서도 논란이 있었음 을 밝혀둔다.

動資部에서 社長團모임

動資部次官의 招致로 80년 7월 3일 會同한 會員 社 社長團모임에서 定款案일부 변경과 각사분담入會 費等 협회설립일정에 關한 政府측의 勸告的 의견 이 있었다.



油協 開所式光경, 80. 9. 29 三一路빌딩事務所에서
(幹事が 설립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定款變更의 可否=各會員社가 지명하는 6名의 任
員을 理事의 定數로 규정한 실무회의定款案을 놓고
政府側은 副會長과 常任理事 各1名의 常勤任員을
追加하고 그취임에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도록 권
고하였으나 일부 반대의견이 提起되었다. 協會가 會
員社 스스로 設立하는 任意的·自發的 단체임을 들
어 정부의 常任理事취임 承認條項 新設与否에 대한
論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動資部측은 主務部長官
의 승인을 얻어야 理事에 취임할 수 있음은 모든 非
營利法人의 설립에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大韓石油
協會에 對하여만 예외를 설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
다. 이問題에 關하여는 이날 모임에서 結論을 얻지
못하고 總會에서 再次 討議·決定키로 合意했다.

設立費用의 分担=정부는 各會員社가 1백만원씩
의 入會費와 原油導入時마다 배럴당 1원씩 分担한
다는 協會基金造成方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會員
社가 모두 入會費를 부담하여도 총액 6백만원으로
서는 事務所 賃借보증금에도 充당될 수 없으므로
設立準備實務委員會가 모든 設立費用을 추정집계하
여 金額의 다과를 막론하고 各會員社에게 均등분担
케 하되 協會의 基金助成은 설립후에 정하기로 合
意하였다.

設立準備實務委員會= 設立主管社는 油公으로 정
하고 各社 法制部長중심의 實務委員會로 하여금 設
立事務를 진행케 할 것을 합의한 后 이날 모임은 散
會되었다. 各社에서 指名된 當時의 設立準備實務委
員會의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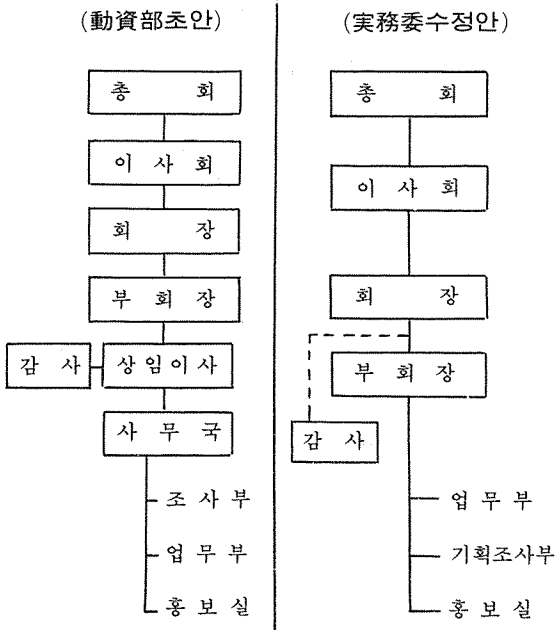
한 흥 우(油 公)	진 영 일(湖 油)
나 옥 균(京 仁)	유 기 택(雙 竜)
황 은 영(極 東)	유 진 성(油開公)

發起創立總會의 開催

80년 7월 9일 油公에서 개최된 發起創立總會는
6 個會員社 代表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油公
劉載興 社長 主宰下에 열린 이날 總會附議案件은 다
음과 같다.

- 第1 号議案：定款承認
- 第2 号議案：會員의 資格基準 승인
- 第3 号議案：理事와 監事의 선임
- 第4 号議案：會長의 선임
- 第5 号議案：設立負擔金의 징수
- 第6 号議案：主事務所의 설치

副會長을 常勤理事로 = 實務委員會가 定款案에 반영한 協會의 조직은 動資部資源政策室 試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것이었고 定款案 審議 報告時 총회에서 集中的으로 토의된 사항도 바로 이 점에 관한 것이었다.



상근부회장은 意思決定機關과 別個의 業務執行機關으로서 個個 會員社의 입장에서 超然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유엔총회 사무총장이 총회 내지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음에도 당해기구의 집행부를 훌륭하게 대표하는 것처럼 상근부회장이 반드시 理事會의 構成員(BRAND MEMBER)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意見이 있었다. 協會의 조직에 관하여는 討議 끝에 常勤理事로서는 副會長 1人만을 두고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정부가 同折衷案을 양해함에 따라 總會는 다시 續開되었고 動資部 尹秀吉 石油局長이 參席한 가운데 定款案 第17條와 第18條를 일부 보완한 후 設立準備實務委員會 부의안을 協會 定款으로 승인하였다.

第2号議案으로 부의된 「定款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會員資格의 기준」은 1日 原油處理能力 10,000 배럴 이상규모의 石油精製施設을 갖춘 精油会社로 定할 것을 全員一致로 議決했다.

會長은 輪番制로 = 第3·第4号 議案은 理事와

監事 및 會長의 선임인데 總會는 任員選任決議에 앞서 會員社의 차례(SEQUENCE)에 관하여 양해합의하고 油公·湖油·京仁·雙龍·極東의 順으로 定하였다. 또한 各會員社가 차례에 따라 輪番制로 會長에 취임하고 會長職을 맡은 會員社의 次順位 會員社가 監事를 지명키로 의결의 일치를 보았다. 이와같은 諒解事項에 좇아 油公의 劉載興 社長이 初代會長으로, 湖油가 指名한 安孝榮 公認會計士가 監事로 각각 選任되었다. 이날 總會에서는 定款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아래와 같이 會員社 社長 여섯분을 理事로 선임한데 이어 모든 任員의 任期를 2年으로 할 것과 副會長의 선임을 后日로 연기할 것을 양해하였다.

- 油公-劉載興 社長 ●湖油-具平會 社長
- 京仁-金鍾喜 社長 ●雙龍-李承源 社長



① 創立總會光景, 80. 7. 9 油公에서

●極東-張洪宣 社長 ●油開公-金東祚 社長
 入會費는 2천만원 = 各會員社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만원씩의 入會費를 부담하되 韓國 石油開發公社의 경우에는 80年度중에 納入할 수 없음을 諒解했다. 會費徵收方式에 관하여도 創立總會時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均等分擔案 - 協會는 資本團體가 아닌 社團으로 總會決議權을 포함한 各會員의 권리가 동일할만큼 會費納付等의 의무도 均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差等分擔案 - 原油輸入量이나 생산규모 또는 製品販賣量의 어느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各 회원사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差等分擔함이 現實에 부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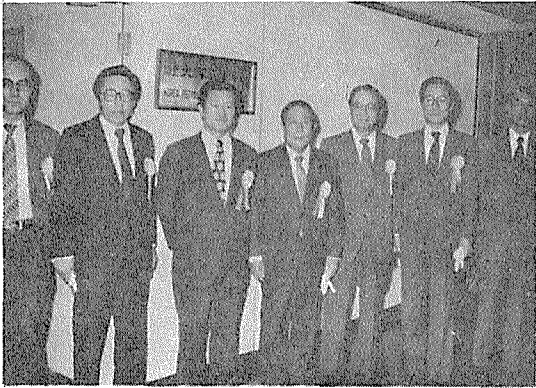
○折衷案 - 精油会社 스스로 설립하는 우리 自身의 協會임을 염두에 두고 一定額에 이르는 通

常의 運營費는 均分하되 추가적인 경비에
 처하여는 各會員社의 규모에 비례하여 분
 담함이 바람직하다.

創立總會는 協會의 本部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
 철동 10번지에 둔다는 主事務所 설치 결의를 끝
 으로 폐회되었다.

懸板式에 이르기까지

8월 5일 設立登記=協會의 設立許可를 받고자 80
 년 7월 18일 民法 第32條와 動力資源部 소관 非營利
 法人의 設立 및 監督規則 第3條의 규정에 따라 ①
 發起人의 명칭·주소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④ 회비
 징수에 정명세서 ⑤ 사업계획서와 수지에 산서 ⑥ 창립
 총회의사록 ⑦ 발기인대표자 지명위임장 ⑧ 임원의



① 현판식을 마치고 : 左에서 3번째 崔東奎 동자 부次官,
 4번째 劉載興 初代 유협회장

이력서·신원증명서·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호
 적등본 등 무려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作成, 動資部에 提
 出하였다. 동력자원부장관은 80년 8월 2일 유정
 제 1337-1408호로 사단법인 大韓石油協會의 設立
 을 許可하면서 국내에너지 수요의 60% 이상을 공급
 하고 있는 국내정유회사 중심의 協會 설립은 바람
 직한 일이라고 그 理由를 明示한 바 있다.

協會設立은 80년 8월 4일 動力資源部 公告 第 25
 号로 官報에 게재된데 이어 같은달 5일 서울民事地
 法 第1837号로 登記를 필하였다.

職員應募 殺到: 協會職員募集 新聞公告에 依하여
 80년 8월 5일 應募 마감한 결과 불과 14名 採用에 무
 려 888名에 이르는 志願者가 殺到하였다. 職級別 採

직	급	채용인원	응모자
部·室	長	3	151
課	長	4	240
社	員	7	497
計		14	888

用人員과 應募者의 數를 참고로 對比하여 보면 별
 표와 같다.

設立準備實務委員會는 80년 8월 6일 3·1빌딩 23층
 118명에 對한 貸貸借契約를 체결한 후, 同事務室에
 서 延日 會合하고 1次合格者 75名을 書類銓衡에 依
 하여 선발하였다. 特히 各會員社 社長들께서는 部
 室長級 1次合格者 14名中 3名을 선발하고자 81년 8
 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같은날 오후 5시까지 많은 시
 간을 할애하여 金泰允 업무부장, 任益彬 기획조사
 부장, 金乾洽 홍보실장을 채용키로 결정하였다.

部室長級이외의 餘他職員은 設立準備 實務委員會
 가 1次合格者 51名中 11名을 最終合格者로 선발하
 였다. 또한 설립준비실무위원회 油開公側 委員이 金
 경순 업무부장으로 交替되었다.

開所式은 9월 29일에 = 副會長은 選任되지 아니하
 였지만, 創立總會·法院登記·직원채용 등 諸般·設
 立事務가 종결됨에 따라 80년 9월 29일 오전 11시 協
 會 會議室에서 開所式을 舉行했다. 協會의 任職員
 은 勿論 崔東奎 動資部 次官을 비롯한 관계관과 會
 員社 任職員 다수가 참석하여 개최된 이날의 紀念
 式은 國民儀禮와 設立委員會 幹事의 設立경과보고
 에 이어 會長의 紀念辭, 動資部長官의 祝辭의 順으
 로 進行되었고 閉會후 懸板式을 가졌다.

× × ×

이로써 社団法人 大韓石油協會는 국내석유산업에
 연관된 各種 자료와 정보를 蒐集·분석·보급하고,
 석유산업 施策運用に 도움이 되는 石油業界의 意見
 을 調整·집약하며, 會員社의 各種 사업활동을 支
 援함에 의하여 國民經濟의 안정과 발전에 寄与코자
 하는 重大大한 사명을 띠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간 政府는 물론 會員社 상호간에도 몇가지 異見
 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協會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
 을 기원하는 一致된 輿望에 힘입어 諸般 설립업무
 를 쉽사리 마칠 수 있었음을 添記하면서 끝으로 協
 會의 前途를 진심으로 축복드린다.*